

\* 이 논문은 1991년도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독일통일과 그 도전 —사법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 이 민호

1990년 빠른 속도로 진행된 독일통일은 동독 주민의 의사 결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다수결에 의한 그 민주적 결정은 아직 잠정적 정통성에 불과하다. 즉 통일 후의 여러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세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첫째, 사법적 측면으로, 동독에서 민주적 법치국가를 확립하기 위해는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이는 구동독의 사법 관계자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교체를 수반한다. 그리고 정치교육 또한 그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 경제적 측면인데, 통일 후 동독 경제는 서독지역으로의 노동력과 인간자본의 유출, 국제경쟁력에 맞설 수 있는 저임금 구조의 지속이라는 두 가지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동독 주민들의 '창조적 파괴'는 단지 제한된 지역에서만 그리고 장기적 과정에서만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측면이다. 구동독의 문화와 학문은 당에 의해 지배되었고 중앙집권적이었다. 다원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쌍방간 비판적 대결이 요구된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 교육체계와 학술기관을 재정비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이 또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40여년에 걸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동서독의 이질화가 단시일 내에 극복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민주적으로 잘 해결될 때에만 통일은 완성되는 것이다.

### I. 서 론

1989년 후반부터 1990년 독일통일까지의 과정은 참으로 전격작전을 방불케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오랜기간의 발효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코 「역사의 돌발사건」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1989년의 사태는 「혁명」을 방불케 하고 동유럽국가의 사회주의 기반을 동요시키고 「모든 노동자들의 조국」이었던 동독은 항복하고 말았다. 동독을 포함한 동유럽의 붕괴는 곧 이들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의 거대한 지배체제의 붕괴에 맞물려 있었다. 소련을 포함한 동 유럽의 소련위성국들은 일당독재와 통제경제라는 강압적 체제로서 유지되어 전체주의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20세기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의한 「전체주의의 세기」였던 동시에 그 전체주의가 극복되는 세기이기도 하다.

베를린장벽의 붕괴의 결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DDR)의 소멸을 가져오고 동독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병합되었다. 동독체제의 붕괴는 밖으로 부터 충격때문인가 아니면 그 내재적 원인때문인가 하는 의문에 직면한다. 물론 역사적 발전에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일률적인 원인과 결과, 시작과 종말이란 없다. 이 점을 감안하면서 동독붕괴 직면의 상황에서 동독의 붕괴과정, 다시 통일후에 걸쳐 독일의 체제적 모순과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 통일후 동·서독의 각 부분의 통합과정에서 드러난 이질화의 문제 그것의 극복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대상으로 삼는 영역은 1) 사법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문화·교육적 측면을 총점으로 삼고자 한다.

## II. 사법적 측면

급작스러운 두 독일의 통일은 먼저 법률제도의 통합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수십년간, 분단이 계속되는 동안 쌍방의 법률제도는 과연 이들이 과거에 한 나라였던가 싶을 정도로 이질적으로 발전하였다.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SED, 앞으로 사통당으로 약함) 정권이 그 주민에게 강요한 법질서는 서독의 자유민주주의 법질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동독 과학아카데미에서 편찬된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이론과 법률」에 관한 문서나 대학교재는 「서독의 국가체제와 법률제도」에 대해 상당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 내용은 한결같이 연방공화국(BRD, 서독)의 법률사상이나 법률제도를 그릇된 시각으로 파악하여 이를 「계급적 적대」의 법으로 단정하고 서독의 검사와 판사를 지배계급의 봉사자, 즉 부르주아지의 도구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독의 법률 관련자를 인민과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한다.<sup>1</sup>

이러한 교조적인 법률관념으로 강압정치를 계속해 온 동독정부로서는 소련의 페레스 트로이카에 의해서 진행된 법률제도의 개혁에 상응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가 없었다. 동독의 법적발전의 단계에 대해서 서독의 법학계에서는 이미 수십년간, 처음부터 주목해 소수이긴 하나 그 뒤에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그 법체계 및 사법제도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여 왔다.<sup>2</sup> 그 대상은 몇 단계로 나누어 진다. 2차대전 패망 후부터 첫 10년간은 동독의 지배체제를 부정한 결과 동독의 법규법이나 법현실은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양독관계의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서 동독법자체의 규범체계에 대해 그 체제 자체에 준한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독의 정치는 사회의 현실적 관계로 계속하여 무시되었다. 그러나 점차 그 법규법과 법현실의 관계와 그 한계에 대해서도 연구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sup>3</sup>

이에 따르면 동독의 사법제도자체는 1949년 헌법의 발족과 함께 기초가 놓여졌으나

1 H. Toeplitz, *Der Bürger und das Gericht* (O.Berlin, 1984) 44

2 G. Brunner,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München, 1979) 등

3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2 vo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utsche Beziehungen (Bonn, 1972)

1952년, 1963, 1965, 다시 1973년에 걸쳐 수정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사법제도(Sozialis-tische Rechtspflege)」로 불리워지는 동독의 법률은 사통당, 즉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의 당 지도체계 밑에 운영된 국가체제의 핵심 부분을 구성한다. 동독은 그 헌법의 전문에 명시되었듯이 「노동자의 정치조직」, 즉 계급국가를 표방한다. 이 국가는 민주적 중앙집권주의를 표방하는데 이는 레닌에 의해서 발전된 사회주의 국가조직원리에 기초를 둔다.<sup>4</sup> 권력행사의 통일적 체제를 추구하여 법률제도도 따라서 3권분립에 의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최고 국가권력기관인 인민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함으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사법제도, 즉 최고재판소나 최고검찰청도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sup>5</sup> 따라서 대법관과 모든 법관, 검찰총장과 모든 검찰도 인민의회에 의해서 선출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주의 국가는 계급국가이므로 권력행사의 지배적 원리는 의식적인 당파성, 즉 노동자의 계급적 이익을옹호하는 법률운영이라는 촛점에 집중되는 통일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형사법, 민사법, 가족법등은 사회적 발전, 즉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 승리, 공고화라는 척도에 의해서 판결될 뿐이다.<sup>6</sup>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법체계에서는 형사재판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점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운영되는 서독에서 민법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동독에서는 원칙적으로 시민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없다. 사회주의 체제는 모든 재산이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송사태는 일어날 수 없다. 재산권을 국가에 반환하고 인민이 국가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요구하는 제도를 뜻 한다.

개인의 자유 또한 오랫동안 구속되어 8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당국에 의한 여행허가제가 알려지고 허가거부에 대해 비로소 동독인민이 항의를 표시하게 되었다.<sup>7</sup> 이 문제는 비인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의 회의에서 논의됨에 따라 동독 사통당 정치국은 행정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고려하게 되고 1989년 7월에 정식으로 법안으로 그 구체적 규정을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동독 사법제도는 형법운영에 있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독점 부르조아지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으로 형법을 해석하고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범죄에 대한 비유화적이고 비보상적(배상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인 투쟁만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유형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해관계의 합의를 기초로 한 개인과 사회의 관계로 인하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도 범죄자가 될 수 없는 반면, 인간사회의 내재적 모순을 안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는 인간

4 민주적 중앙집권체제에 대해서 kleines politisches Wörterbuch(O-Berlin, 1989) 항목참조

5 R. Wassermann; Die Vereinheitlichung des Rechtswesens in: E. Jesse u.a,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Bonn, 1992) 250이하

6 R. Wassermann, ebd.

7 R. Wassermann, ebd.

의 결속이 허물어져 범죄가 일상사라는 경직된 법률관을 드러낸다.<sup>8</sup>

따라서 사회주의 형법은 오직 두 종류의 범죄만을 구별한다. 즉 아직도 자본주의 잔재가 뿌리뽑히지 않고 그에 의존하여 노동자와 농민의 힘과 그 성과를 배제하고 자본주의 체제로 복귀하려는 범죄가 그 하나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 사상으로 저지르는 범죄 일반이다. 이러한 정치범죄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이념적으로 사회주의 발전을 방해하고 차단하려는 범죄에 속한다.<sup>9</sup>

이러한 일반명제를 강요한 동독 사법제도는 한없이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억압하고 이주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가자체가 억압제도로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은 경찰, 비밀경찰, 사법재에 의해서 억압되고 수없는, 죄없는 사람들에게 반역의 죄명을 씌우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억압기구로서의 동독정권의 급작스러운 붕괴가 닥쳐왔다. 동독정부의 붕괴후의 첫 정치적 상황은 사통당을 포함한 교회단체, 모든 정파가 모여 국가의 장래를 협의키 위한 원탁회의(Rund Tisch)가 소집되었다.<sup>10</sup> 이러한 노력은 억압기구인 공산정권으로 부터의 「해방과정」을 수행하고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것은 동독을 그대로 하나의 국가로 유지하고 비스탈린적, 즉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목표를 힘축하였다.

이 과정에 사법제도의 기능도 정지되고 재판수속절차는 진행되지 않고 아무런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스스로 새로운 사법질서를 모색하고자 하였으나 과거에 대한 자기비판의 문제에 얹혀 아무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표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은 오직 하나 동독의 법체제를 중지시키고 서독의 법률제도를 도입하는 일 뿐이었다.<sup>11</sup>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비밀경찰이 저지른 범죄나 국가보안성(Staatssicherheit)의 탄압행위가 일반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사통당의 지도위원에 대한 처단이 급선무였다. 이를 처리해야 할 주체는 곧 동독의 총검찰청장과 최고재판장이었으나 이들 스스로도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 1월 22일에 인민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사법제도의 최고책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다. 위로부터 당 서기장 호네커를 비롯한 국가요원에 대한 권력남용과 불법성이 추궁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당 서기장을 비롯한 고위당직자들에 대한 법적추구는 부정부패라는 죄목이었다. 동독 고위층을 부정부패라는 죄명으로 법정에 세우는데 대해서는 서독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독에서도 권력을 남용하여 사재산을 증식시키는 일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들어 일반 대중을 회생함으로써 법을 위반한 재산 증식을 하였다고해서 처벌하는 일

8 R. Wassermann, ebd.

9 동독 형법의 일반조례 Strafrecht, Allgemeiner Teil, Hg. von der Sektion Rechts Wissenschaft der Humboldt Universität und Akademie für Staats- und Rechtswissenschaft der DDR(O. Berlin, 1976) 30

10 U. Thaysen, Der Rund Tisch, Oder : Wo blieb das Volk?(Opladen, 1990)

11 R. Wassermann ebd.

은 부당하다고 비판한다.<sup>12</sup> 그러나 동독의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는 직권남용과 인권탄압을 괄호속에 가두고 문제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들의 부정은 한편에서는 동독인들의 낮은 생활수준에서 측정되어야 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적 평등이라는 요구에 따라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런 특권도 없는 일반 동독국민에게는 이를 국가지도자들은 부패한 사원의 승려들처럼 사기사나 배반자의 역할을 다해온 것이다.<sup>13</sup>

동독조약에 의해 규정된 과도기의 국가형태는 목표 없이 표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법제도 자체가 서독에 흡수되지 않을 수 없었고 동독의 완전붕괴는 필연적이었다. 1990년 3월 18일의 인민의회의 결정에 따라 동독에서 최초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그것은 서독에 의한 흡수통합을 가속화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급기관의 법정은 연방공화국(서독)의 재판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존속 유지되며 주 단위의 재판소는 새로이 구성되는 주 자치기구에 위임되고 동독 최고재판소는 즉각 폐지키로 결정되었다.

통일이 실현된 뒤 법관과 검찰의 자격이 문제되었다. 그것은 즉 사법관계자가 획득한 자격증이 서독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자격을 완전히 정지시키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의 사통당파의 관련정도에 대해서 새로운 주정부가 심의하도록 통일 조약은 지시하였다.<sup>14</sup> 연방공화국에 편입된 지역(동독)에 새로운 제도, 즉 민주적 법치 국가의 질서가 확보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옛 동독출신의 사법관계자에 대한 엄격한 재심여하에 달린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 국가 사회의 내적인 개혁이라기 보다는 한 체제의 붕괴라는 점에서 본다면 구 국가와 관련된 개개인의 과거의 정치적 행동에 따라 심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당연한 귀결이다. 이 점에 대해서 서독의 정치학자 브라허(Bracher)는 「정치성이 재심되어야 하는 이유는 주민에게 정의에 입각한 민주적 법치국가의 신뢰를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브라허는 구 동독정권과 당 요원의 권리남용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때까지의 암제자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없다면 주민의 눈앞에서 민주적 법치국가의 회생자를 모독하는 결과가 된다고 역설한다. 브라허는 다시 새로이 편입된 주에 정치기구를 새로이 구축하고자 할 때 특별히 사법제도에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sup>16</sup>

이러한 법관의 재심사 내지는 교체문제는 전후 서독정부가 나치 치하의 사법관을 심사하였던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과거 나치 치하의 법관들은 그래도 정통적인 법체계와 법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동독정권은 고전적 법률체계와 법사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법질서를 전혀 다른 토대와 이데올로기 위에

<sup>12</sup> R. Wassermann ebd. 266

<sup>13</sup> R. Wassermann ebd.

<sup>14</sup> Einigungsvertrag Anl. II Kapitel III

<sup>15</sup> K. D. Bracher, Vierzig Jahre Diktatur(SED-Unrecht) in : Recht und Politik, 27(1991) 137-141

<sup>16</sup> K. D. Bracher, ebd.

구축함으로써 유럽-독일적 전통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본다.<sup>17</sup>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변혁으로 실시된 재심과정은 동료간의 투표와 주의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었으나 주마다 재심기준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재심 신청자는 전체 527명 중 345명이었고 그들의 연령은 35세이하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구 동독지역의 사법관할을 서독수준으로 보충하고 또한 추방당한 공석을 충원하기 위해 상당수의 관계자가 서독으로 파견되었다.

구 동독 사법 관계자에게 필요한 것은 장래에 대한 방향전환, 즉 과거에 대한 청산이며 이를 위한 정치교육의 과제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때 다시 절실하게 주목되는 것은 과거 바이마르공화국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이상이 붕괴됨으로써 잔인한 독재의 길을 예비하는 역사의 실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가 그대로 받아 향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고 이점이 동독주민이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 걸어야 할 협한 노정이다.

### III. 경제적 측면

장벽의 제거와 동독의 붕괴에 따라 동·서독은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으나 경제면에서는 과거보다 더 깊은 골이 뚫여졌다고 논의된다. 독일이 단일한 화폐, 경제, 사회로 통합되었다 하더라도 시장경제력이란 짧은 시일내에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동독뿐만 아니라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사회와 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를 건설하려는 노력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다. 현실 사회주의 사회제도의 좌절에는 많은 원인이 내포되어 있다. 팽창된 관료주의와 그 무능, 경제운영의 완고함, 공산당의 통제 등등이 결국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이끌어 갔고 이것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모든 분야에서 인간자원을 적재적소에 이용할 수 없는 체제의 모순은 무엇보다도 실물경제를 차단한 통제경제에서 들어난다. 통제경제의 대명사인 계획경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하는 기술혁신의 자극을 제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직적으로, 또한 인위적으로 억압하였던 것이다. 5개년 계획이라는 경직된 경제운영은 관료에 의해 발안되고 추진되었으므로 기술혁신의 계기가 들어설 여지가 없었다.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개별기업이 실물경제와 시장성에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비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일정한 생산양식과 공급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어야 하고 계획된 목표를 변경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소련을 중심으로한 동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은 70년대말까지 서방국가들이 극심한 실

17 R. Wassermann, ebd.

업률, 높은 인플레, 낮은 성장 등으로 깊은 경제적 난관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에 큰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는 시장경제의 병리학적 징후가 극복되고 강력한 경제적 상승으로 난관이 극복되었다.<sup>18</sup> 조금하게 말한다면 80년대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80년대의 서방경제의 비약적 상승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게 서방을 따라 잡을 기회가 결코 없는 것이 확실해진 시점에서 그 붕괴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80년대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명백하게 후퇴하였는데 대해서는 아직도 별 해명이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유럽 각국에서 계획경제로부터의 이탈이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물론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은 일정치 않다. 동독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도 일시에 시장경제로 돌입할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이행시킬 것인가를 확고하게 결정할 수가 없었다.<sup>19</sup> 그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것은 생활의 서방적 수준이었으나 충격적 요법과 점진주의사이에서 갈피를 못잡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점진주의에 대한 신념은 그 자체, 결정적인 사고의 결함을 내포한다. 계획경제로 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장경제의 동력적 발전 속에는 복합성과 상호의존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진주의란 비유를 들어 복합적인 기계 속에 텁니바퀴 하나를 끼어넣고 다른 부분은 정지시킨 채 이 텁니바퀴만을 작동시키는 것과 같다고 본다. 충격요법은 그에 비해서 일시에 모든 기계를 작동케 하는 것으로 비유될 수 있다. 충격요법이 거둔 가장 고전적인 예가 1948년 서독 정부가 실시한 통화개혁이었다.<sup>20</sup> 당시 에르하르트 경제장관의 지도하에 통제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대담한 전환을 계획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기본 식량이나 생활필수품, 또한 가옥 임대료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물자가 통화개혁을 계기로 자유가격 하에 놓이게 됨으로써 퇴장된 물자가 출하하게 되었다. 이로써 서독인의 영리활동이 자극받고 가속화하여 결정적 성공을 거두었다. 서독지역의 공업생산은 급상승하여 그것이 곧 「독일 경제의 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에 비해 점진주의가 실패한 고전적 예가 소련이라 할 수 있다. 소련은 부분적 수정만으로 계획경제를 점진적으로 개혁하고자한 결과,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자할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추지 못하였다. 이러한 실험의 좌절은 동유럽의 여러나라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다.<sup>21</sup>

충격요법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대체로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물가상승이란 한번 나타났다 아무런 영향도 없이 사라지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인플레

<sup>18</sup> W. Flassbeck/W. Scheremet, Wirtschaftliche Aspekte der deutschen Vereinigung (In : E. Jesse u.a,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Bonn, 1992) 280

<sup>19</sup> ebd. 283

<sup>20</sup> Narr, W. D./Thränhardt, D.(Hg.)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tehung, Entwicklung und Struktur (Königstein, 1979)

<sup>21</sup> W. Flassbeck/W. Scheremet, ebd.

와 생활수준의 저하라는 현상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우선 임금상승은 기업이윤과 동시에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임금상승과 평가절하 등의 현상이 거의 모든 동유럽국가들을 염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계획으로 개혁 노력의 템포를 늦추는 것으로서는 이미 시작된 실질수입의 후퇴를 막을 수 없다. 이러한 현상에 필수적인 국면은 정부가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실시하는 일과 경제의 실질적인 주체인 노동조합에게 물가상승이란 일시적인 것이고 공급물량의 확대로 가격이 안정됨을 인식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이나 개혁의 속도를 늦춤으로도 실질수입의 후퇴나 실업률을 저지할 수는 없다.<sup>22</sup>

동유럽에서는 외국원조 없이는 인플레, 임금상승, 화폐가 절하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 이유는 국가소유의 경영을 사유화하고 개인의 이니시아티브와 기업정신을 발전시키는 일이 요구되었으나 동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단기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덧붙여 이들 나라들은 자본의 결핍에 고통받고 있었다.

다시 전후 서독의 경제상황을 살펴본다. 1948년, 독일에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함께 기능적인 기업정신이 존재하였으며 단절되지 않는 시장경제의 전통이 남아 있고 40년간 사회주의의 경험처럼 국가 관료제가 그토록 인간사고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소득정책은 온건하고 단기적 가격상승을 임금상승으로 대처하지 않고 이자는 50년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공급의 탄력성과 가격의 안정으로 통화정책은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sup>23</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통일직후의 동독경제의 충격을 살펴 보고 그 문제점에 접근해 보자.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간에는 통화의 통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동독의 서독으로의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었다. 모든 동 유럽국가들처럼 동독에서도 한편에서는 높은 소득과 밖으로 부터 재고정리에 따른 낮은 수입품 가격간의 갈등, 다른 한편에서는 증가하는 실업률의 위험에 노정되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통화통일(서독과 동독의 화폐 교환율 1:1)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1989년 말에 동독 화폐 4마르크가 서독의 1마르크에 교환되고 있어서 이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 예상되었다. 화폐통일에 의한 동독화폐의 절상은 여러가지 모순을 안고 있었다.<sup>24</sup> 1948년 서독의 통화개혁에서는 미국 달러화에 대한 낮은 비율을 그대로 고수하여 1달러에 4마르크를 유지하였다. 이 때 교환율을 1:1로 하였더라면 서독의 경제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동독에서도 첫 3개월간 실업률을 극적으로 증가시킨 시장경제에의 이행자체가 아니라 이행의 결과 공급 충격을 훨씬 넘게 과잉 보상한 화폐가 절상의 부정적인 수요충격이 문제였다. 정부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결함은 1948년 서독의 통화 및 경제통일의 경험을 지니치게 단순하게 동독에 적용한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의 경제실정을 무시하고 시장경제의 여건만을 도입하는 일만이 경제의 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믿었던

<sup>22</sup> W. Flassbeck/W. Schemert, ebd.

<sup>23</sup> Narr, W. D/Thränhardt, ebd.

<sup>24</sup> W. Eucken, Deutschland vor und nach der Währungsunion 참조

것이다. 새로운 조건이란 동독 경제 자체가 가파른 성장곡선으로 선회하고 비교적 짧은 시일안에 서방과 비교될 수 있는 복지수준을 겨냥하도록 그 경제에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sup>25</sup> 국가 통제에서 해방되어 기업정신이 싹트고 급부능력을 갖춘 조세제도가 도입, 실시되고 여기에 산업시설을 위한 투자,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해 필요한 서독자본의 지원을 얻음으로써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미 단시일 안에 생산에서의 물자결핍이 사라지고 원료를 경제적으로 투입됨으로써 생산성의 상당한 증가가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시장경제의 도입은 전체경제의 수요 및 공급기능을 표시하는 도표에서 긍정적인 공급충격이 나타내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동독과 1948년의 서독은 비교될 수 없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sup>26</sup>

1948년의 서독은 마크로의 낮은 교환비율과 지속적인 임금으로 수출부문에 경제발전의 동력이 생겨난 것이다. 이에 비해 1990년 7월의 동독 화폐의 300% 가격절상은 동독의 생산체계를 붕괴하고 밖으로 부터 물자공급이 쇄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독산업의 경쟁력은 재생을 못하고 그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었다. 1인당 생산성은 90년 후반기에 는 극도로 위축되는 반면,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서독상품에 대한 동독주민의 선호도는 더욱 그 자체의 생산성을 위축케하는 결과가 되었다.

통화, 경제, 사회의 통합으로 동독내의 모든 생산은 극적으로 쇠퇴하고 1990년 후반기의 동독지역의 총생산은 평균해서 1989년에 비해  $\frac{1}{4}$ 로 감소되었다. 통화통합이후 몇달간은 전해에 비해  $\frac{1}{2}$ 로 감소되는 결과가 되었다. 이것은 비단 생산부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상업과 운송부문에서도 20%의 감소가 나타나고 농업과 산림업에서도 서독 마르크가 도입된 뒤에는 구매자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sup>27</sup>

1990년 후반기에 전체 경제생산의 중단은 국내시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메콘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되었던 동유럽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나 수출관계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외국시장의 상실은 1990/91년에 걸쳐 산업생산은 전년도에 비해 30%가 감소되었다. 서독에서 동독으로 쇄도하는 상품은 동독주민의 구매력을 중대시키고 이러한 사태는 일시적으로 서독경제의 활황을 초래하여 그 이전 3년간보다 200만 이상이 생산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동독에서의 수요의 증가에 따라 서독경제는 팽창하여 주로 식료품과 소비재산업이 전년도에 비해 20%의 생산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반면, 서독경제는 원료수입의 중대와 대외무역의 침체로 1991년초에는 1981년 이래 처음 나타나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하게 되었고 다시 4월에는 교역적자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한편으로는 서독경제를 서유럽각국의 성장을보다 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동독경제 자체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던 것이다.<sup>28</sup> 특히 동독경제가 서독과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숙한 자본형성을 토대로 막대

25 W. Eucken, *ebd.*

26 W. Flassbeck/W. Schemert, *ebd.*

27 W. Flassbeck/W. Schemert, *ebd.*

28 W. Flassbeck/W. Schemert, *ebd.*

한 자본투여와 그와 결부된 노동력의 형성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노동시장에 나타난 동·서독간의 경제적 발전의 격차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경제적·정치적 통일이 세부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써 그 격차를 더욱 깊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되풀이 하거니와 동독경제는 40년이상이나 완전 고용을 국가의 최고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서 운영되던 노동관계가 몇주일간의 기간내에 노동시장의 완전한 개방으로 연결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수십년간, 훌륭한 노동시장이 형성된 서독과는 완전히 이질적이고 그 낙차가 일소 극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결과가 된다.

몇 선택된 노동시장의 통계만으로도 분열의 국면을 쉽게 밝힐 수 있다. 1990년 하반기에 서독의 근로종사자의 수가 전년도에 비해 80만(3.1%)이 증가되는 데 비해 독일의 동부(구 동독)의 근로자는 130만(140%)이 감소되었다. 노동력의 약 40%가 종사하는 제조업의 분야에서 일터의 총수는 거의 20%가 감소되었다.

경쟁력을 이미 상실한 부문에서 일터가 급격히 감소됨으로써 — 경쟁력을 잃은 부분에 상응한 새로운 일터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 동독의 실업률은 급격히 상승하였다. 화폐의 통일후 1년간에 107만의 실업자가 등록되고 이는 12.1를 기록한다.<sup>29</sup>

고용의 범위가 좁아짐으로써 실업이라는 현상을 완전고용에서 제외된 사람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첨가돼 200만의 단기노동의 실업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단기 노동이란 본질적으로 실업의 성격을 띠는 것이다. 단기 노동의 실업률은 1990년 44%, 1991년 57.4%이어서 노동시장의 재편성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다.

통일이 이룩된 뒤에서는 구 동·서독의 노동시장에 대한 공급과 수요의 관계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을 서로 분리해서 따로이 평가할 수는 없다. 통일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양측의 노동시장을 묶고 있는 독일 전체의 경제를 축으로 할 때 동독으로부터의 서독으로의 노동력의 이동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완전 이주의 형식으로나 왕래하는 형식을 막론하고 노동력 이동의 결과 상대방의 부분노동시장의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의 전략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지 않다. 통일된 하나의 독일내에서의 이동은 언어의 장애가 없다는 점, 값싼 노동력의 수용력, 이주에 필요한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에서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동은 구 동독의 극도로 불리한 조건 때문에 곧 봉괴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월평균 수입이 동독에서는 1991년 후반, 1,400마르크인데 비해서 서독에서는 3,500마르크임으로 동독인은 서독인의 겨우 40%를 지불받는 셈이다. 동독의 이러한 노동시장의 불리한 전망을 고려한다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두드러진 이주가 예상된다. 장벽의 붕괴 이후의 이동의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1991년 취업 가능한 연령층에서 거주지를 동독에서 서독으로 옮긴 수는 14만에 이른다. 1991년 말에는 양측을 왕래하는 50만이 여기에 첨가된다.

29 W. Flassbeck/W. Schemert, ebd. 293

장기적으로 볼 때 두가지 형태의 노동력의 이동은 동독의 투자환경에는 심대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양질의 노동력의 결핍으로 투자가 방해받는다고 할 때 동독지역의 경제재건의 가능성은 주민이동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sup>30</sup> 이 지역의 경제적 조건을 일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서독을 생활의 중심으로 택한 노동력이 동독으로 다시 귀환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물론 왕래 노동자의 경우는 그들의 거주지를 동독에 갖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협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간에 동독에 있어서의 실업상태와 서독에서의 취업은 이 지역에서 「인간자본」의 상실을 결과케 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노동이동에만 국한한다면 부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서독에서의 기술습득은 동부지역이 서독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는다는 적극적 의미가 평가될 수 있다. 여기에는 단기적인 징후와 장기적 결과라는 2중적 구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서로 다른 자본투여, 노동생산성, 임금수준을 간직한 채 두 지역간의 물리적 장벽을 열어 놓을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면 노동력의 이동은 필연적인 것이다. 저임금 지역의 노동의 감소는 고임금 지역의 노동의 파이프를 동시에 수반한다.<sup>31</sup>

화폐, 경제, 사회의 통합으로 동독의 경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그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 때까지 동독경제는 그 경쟁자나 또는 외국으로부터 투자증대의 자극이나 구조전환을 위한 아무런 자극은 받지 않았다. 다시 동독경제는 세계시장에서 고립되어 왔던 것이다. 화폐통합 이후에야 겨우 동부독일의 경제는 세계시장을 향해 문을 연 것이다. 동독경제는 각 생산단위의 임금이 세계시장보다 낮을 때에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동독경제의 재건을 위해 분명 유리한 고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동독경제가 직면한 두개의 딜레마는 빠져 나가는 노동력과 「인간자본」, 그것을 막기 위한 높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요구와 이와는 역설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맞설 수 있는 저임금 지속이라는 2중적 구조이다.<sup>32</sup>

그러나 문제는 서독으로의 탈출과 노동임금의 차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지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는데 있다. 통일 이후의 동독시민의 상황은 높은 임금을 쫓는다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장래의 지속된 수입이 기대되지 않는다는 사실, 즉 동독경제 대한 불신이 탈출과 깊이 연관된다. 따라서 동·서독의 임금차이의 평준화에 앞서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자본—노동의 투여관계와 관련하여 서독수준의 자본투여가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구 동독 노동인구 300만 중 200만을 산업부분에서 일터를 제공하려면 1인당 25만 마르크 따라서 총 자본투여는 5,000억 마르크가 소요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제적 통일에 과연 다른 선택은 없었겠는가? 이 대답은 어렵고도 물음자체가 한가하다.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을

30 W. Flassbeck/W. Schemert, ebd.

31 W. Flassbeck/W. Schemert, ebd.

32 W. Flassbeck/W. Schemert, ebd.

수 있을 것이다. 물음은 어떤 외적 조건하에서 동독의 서독에의 흡수통합이 가능한가에 있지 않고 동독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제라도 다시 그 준비를 갖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구 동독주민이 그 통일과정에서 낡은 동독의 자본재의 가치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생산능력을 만들어 낸다는 이르바 「창조적 파괴」라는 고통으로 충만된 과정이란 대개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 그것도 장기적 과정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통화통합에 의한 단절을 초래하고 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은 세계시장에서 단절된 구 동독의 경제와 국민에게 아무런 차별없이 강력한 타격을 가한 결과가 되었다.<sup>33</sup>

통독과정에서 나타난 성급한 정책결정에 앞서 구 동독주민이 그 경제적 후진성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과도기를 인정하는 필요한 인내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것을 갖추지 못할 때 모든 통일의 실험은 좌절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통일의 성과가 단순한 선물로 제공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 상황의 통일, 다시 말하면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국면으로 부각한다.

#### IV. 문화적 측면

두개의 독일이 40년간의 법적·경제적 생활의 분단으로 고통받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는 많은 애로가 가로 놓여 있음을 보았다. 40년간의 문화생활의 측면은 어떤가? 장벽의 개방으로 일시에 정치적으로 통합된 독일은 그 문화면에서 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는 법적·경제적 측면보다 문화면 더 깊은 골이 파여지고 그 극복은 상당한 시일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본다. 문화란 원래 복수의 구성체가 그 아이덴티티와 자기의식을 창조할 수 있는 가치의 근원을 뜻한다. 예컨대 정신의 고양성, 관용, 환상, 즉각적 판단의 의지 등 수많은 요소가 문화의 표지에 포함된다. 두개의 독일이 40여년 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 감정에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공통한 일체감을 발전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된다.<sup>34</sup> 옛 서독인과 마찬가지로 새로이 편입된 동독인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통일 직후에 드러난 증상은 새로운 극우적 성향, 동·서간의 중폭된 대립감, 거기에 겹친 사회적 불안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동시적인 두 개의 독일이 일치하고 동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연방적 정신 속에서 각자가 가진 다양성과 다양성의 전제를 확인하는 일이 요구된다.<sup>35</sup>

33 J. Habermas, 'Die zweite Lebenslüge der Bundesrepublik=Wir sind wieder "normal" geworden':in Zeit

34 G. Mutschler/J. Rostok, Kultur im dentschen Einigungs Prozess(in : E. Jesse u.a,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Bonn 1992)

35 G. Mutschler/J. Rostok, ebd.

다원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하더라도 동·서의 사회적 전통에 대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편견에 대해 쌍방간 비판적으로 대결하는 일이 요구된다. 이때 문화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구분해야 하는 일이 요구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문화 전체가 반드시 당과 국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일이 시급하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자생적이고 자율적 문화기반이 있는 것이다. 당에 의해서 주도된 문학, 연극, 음악, 예술이다 하더라도 그속에 성장된 순수 예술성은 어떤 인간적 윤리에 바탕을 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의 입김이 닿지 않는 자생적인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40년간의 독일의 분단은 심각한 문화의 이질화를 초래하였고 그것은 과거 40년간의 전통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미련의 전망과도 깊이 관련된다는 점에서 전통의 단절이 시급하다. 따라서 새로운 문화건설을 위해서는 동·서독의 각각 상이한 특성의 문화가 전체 연방주의와 어떻게 조절될 것인가 깊이 검토할 문제이다. 동독 문화의 중앙집권적 구조의 연방적 구조로의 이행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큰 어려움을 간직한다.<sup>36</sup> 그러나 새로운 발전에 있어서 통일을 주도한 서독의 관료적 구조가 동독을 압도할 경우 어려움은 가중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잠시 구 동독의 문화정책을 조상에 두고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1948년 동독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스탈린식 소비에트체제의 문화정책이 동독만이 아니라 동 유럽 전체에 강요되었다. 1947년에는 코민포름(Cominform)이 결성되어 소련과 인민민주주의 국가, 즉 소련과 그 위성국가간에는 문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공산주의 정보국(Politobureau)은 각국이 독자적 문화정책을 추구하는 일을 극력 저지하였다. 이에 최초로 반발한 것이 곧 유고이다. 코민포름의 기관지 「중유럽 Mitteleuropa」는 체코의 전위 건축가 카렐 타이게(Karel Teige)를 극력하게 비난하였는데, 그가 추구한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현대예술론이 사회주의 리알리즘과 상치된다고 극렬한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소련은 이미 15년간이나 현대예술, 특히 전위예술을 부르조아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비판하고 당은 사회주의 리알리즘으로 예술계를 통합하도록 지도하였다.

문예인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수여하거나 아니면 엄격한 검열제를 통해 문화활동에 간섭함으로써 예술의 고유한 발전이 저지되었고 예술을 정치에 예속시켰다. 동독 사통당도 예술이 오로지 국가권력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문화정책을 추구하고 예술작품의 전시, 연극 공연, 독회, 수송수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였다.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예술과 문화정책은 사통당의 전당대회에서 결정된 지도노선에 따라서 추진되었다.

말기의 동독사회는 극도로 정치화되어 관에 의한 예술의 전반적인 통제가 예술인의 불만을 증대시켜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란 동독사회를 탈출하는 일뿐이었다. 체제유지가 어렵게 된 상황에서 초기의 사회주의 윤리나 가치이념은 붕괴되고 서방매체를 통한 정보의 확대는 사회주의 문화의 맹점과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났다.<sup>37</sup> 1989년 11월 9일

36 G. Mutschler/J. Rostok, ebd.

의 급작스러운 붕괴는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이었다.

정신적 폐허, 찢어진 정서, 분열된 의식 사이에는 동 유럽사회에 일반적으로 확대된 빈곤이 자리잡고 있었다. 원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빈곤은 불명예가 아니라고 인식되었다. 모든 시민은 사회적 보장을 받고 낮고 안정된 임대료, 급료가 좋지는 않았으나 확보된 일터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동독사회에는 사회의 상층과 하층사이가 날카롭게 양극화되지 않는 중산층 사회라고 할 수도 있다.<sup>37</sup>

그러나 이것이 과연 예술인에게 예술적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는 것인가? 예술이란 예술가가 직면한 현실적 모순과 그에 대한 저항, 이를 토대로 한 작품으로 유지된다. 따라서 그것은 예술인 개개인의 정신적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으로 국가에 대해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예술은 환상과 허구 그리고 이상을 반영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한계에 직면한, 그것을 넘으려고 하는, 고통, 절망, 슬픔, 기쁨, 그리고 희망으로 엮어짐으로써 시대마다, 세대마다 예술작품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날 때 그 진정한 창조활동이 보장받는다.<sup>38</sup>

장벽의 붕괴는 동독 예술인에게 자기해방과 세계로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의 문화는 경제가 당면한 문제보다 더 심각한 국면을 안고 있었다.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공동체의식에 젖은 동독 예술인들이 서방이 추구하는 「개인의 행복」이라는 개념에 쉽게 동화될 수가 없었다. 반면, 문화의 통일을 위해서는 서방문화를 첨단이라고 주장하는 면에 대해서도 비판은 가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문화를 건설하는데 동·서독이 지난날 경험한 것 중에서 극복되어야 할 부분은 되도록 빨리 청산하는 동시에 그 경험에서 생겨난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가 요구된다. 공통한 독일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노력은 과거에 대한 보다 성실한 극복과 결부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문화쇄신의 자극은 전 독일을 덮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하였다. 새로운 문화의 쇄신은 과거와 같이 독일정신을 고양하는 일이 아니고 유럽질서 속에서 독일이 차지해야 하는 문화의 역할을 새로이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치가 국가적 통일의 테두리를 마련한 뒤 이에 뒤따르는 행정적 조치가 있게 마련이다. 정치에 있어서는 국가통일 자체가 완결점이라고 한다면 제도와 기구의 정비는 통일의 시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결된 최종 목표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은 특히 교육과 학문영역에서 더 심각하게 들어난다. 동독이 붕괴되고 통일이 완성된 뒤, 어느 편의 독일이 보다 나은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성과있는 학문연구를 수행하였는가에 대한 물음은 즉각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동독의 교육과 연구의 제도가 서독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상반된 것이라는 점만은 명백하였다. 교육과 학문의 독선적인 중앙집권제도가 동독의 것이라면 서독은 민주적인 연방제도로서 두 제도가 공존할 수 없다는 점이 처음부터 명백해졌다.<sup>39</sup> 따라서 통일후의 교육제도와 연구제

37 G. Mutschler/J., Rostok, ebd.

38 G. Mutschler/J., Rostok, ebd.

39 G. Mutschler/J., Rostok, ebd.

## 도는 어떻게 조정될 것인가?

그런데 이 경우, 동독의 교육제도와 연구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압도적이었다. 이 관점에는 서독의 제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없고 비판을 타부시하는 경향이 엿보인다. 서독의 제도에 흡수된 동독의 교육과 연구라는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 새로운 평성속에서 앞으로의 독일, 즉 연방공화국의 학문과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통일의 현실은 이렇게 한가한 이상적인 제도개혁의 전망을 불허하고 동독의 교육과 연구를 서독의 제도에 준해서 전환시키는 긴급한 현실적 과제가 가로 놓여 있다. 여기에는 동독제도의 토대를 완전히 붕괴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까지의 동독의 교육과 학문이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그것이 정치와는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1989년 장벽의 붕괴까지 동독의 교육제도는 1965년에 포고된 「통일된 사회주의적 교육법(Gesetz über das einheitliche Bildungssystem)」을 토대로 하여 운영되어 왔다.<sup>40</sup> 이 법에 의하면 모두 교육기관은 국가통제하에 놓이고 교회 부속 교육기관이나 사립 교육기관은 교육기능을 담당할 수 없게 하였다. 동독교육의 핵심은 근로자를 토대로 한 「인민의 교육」이라는 이념에 있다.<sup>41</sup>

1954년이래 당 서기장 호네커(Honecker)를 정점으로 하고 각급 교육감독관, 학교경영자의 엄격한 지배체계에 의해서 교육은 장악되었다. 당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고 당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현실에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드러내고 갖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외국으로부터의 거센 비판과 함께 사회의 구석 구석으로부터 정치와 결속된 교육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이로서 체제 비판보다 쉬운 비판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대회」가 1989년 7월에 당 주도하에 열렸다. 그러나 당은 「우리의 구체적인 역사적, 민족적 조건과 요구에 대해 심각한 통찰」로 이룩된 교육이념을 강조하면서 교육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에 당이 본격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당의 구태의연한 교육정책에 대한 반발은 동독정권이 붕괴되기 전부터 거세게 일어나 교회산하의 급진그룹에 의해서 「기초 민주주의 개혁 추진운동(die basisdeniokratischen bildungs- und Schulpolitischen Reformbedingungen)」이 전개되어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었다.<sup>42</sup> “그 밖에도 해아릴 수 없는 많은 조직들이 고전적 인문주의 교육이상을 날조한 문교성과 국가안보위에 대해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였다. 동독의 민주화는 교육으로

40 R. B. Fischer, Bildung und Wissenschaft im Einigungs Prozess (in : E. Jesse u.a., Die Gestaltung der deutscher Einheit, Bonn 1992) 337

41 R. B. Fischer, ebd.

42 R. B. Fischer, ebd.

43 R. B. Fischer und N. Schmidt, Das zweifache Scheitern der DDR-schele, i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7-38/9, 29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래로 부터의 공격에 대해 정부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이를 급진그룹은 교과내용에 대해서도 공격하여 교조적 내용이 담긴 「군사학」, 「국가공민」과 같은 과목만이 아니라 러시아어만을 중요시하는 외국어교육에도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급진그룹의 개혁 노력은 1990년 3월(장벽이 무너지기 8개월전)에 베를린에서 열린 교육대회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한편, 초·중등교육에서 나타난 급진개혁운동과는 달리 대학은 비교적 평온하여 1989년 가을에 학생운동은 야기되지 않았다.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는 경우라도 학생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참가한 것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학자들도 정치적 동요에 민감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장기간에 걸쳐 구조화된 당의 지배, 조직의 메카니즘에 예속되어 자유의사를 발표할 수 없게 되어 구속되어 있었다.

동독사회에서는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은 한결같이 부르조아 이데올로기가 나은 잘못된 학문분질로 규정하고 있었다.<sup>44</sup> 동독에서의 학문연구란 사회적 재생산과 계획적으로 연관되어야 하고 당의 계획된 목표에 종속되어야 하는 숙명성을 지닌다. 학문자체의 성과보다는 정치성과 연관되어야 하는 극히 비학문적 토양에 동독의 학문은 기능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내용도 이러한 비학문적 연구풍토에서 진행되고 교육목표도 정치와 연관되어 있었다. 대학진학 상황도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계획에 따로 국민경제적, 전체사회적 척도에 따른 효용성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대학의 수용능력과 입학허가 등이 정치지배의 도구로서 대학의 기능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내용이나 형식이 국도로 정치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학생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이론을 필수토록 되어 있었다. 이른바 「유물사관」「정치경제학」「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등이 곧 그것들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학문일반에 대한 통제는 연구기관의 재정적 관장, 연구테마 선정의 개입등으로 강화되는 한편, 재정악화로 인한 국제적 전문영역의 정보교환의 미비와 최신 실험기의 불비가 초래되었다.<sup>45</sup> 이런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통일후의 서독과의 학문적 결합을 고려할 때 자연과학의 경우는 인문·사회과학보다 한결 쉬운 통합을 예전할 수 있었다. 인문사회과학 일반은 사회주의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와 긴밀히 결합된 결과, 국제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독일내에서의 통합도 어려움을 안고 있는 반면, 수학, 지질학, 천체물리학, 의학등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성과를 추구한 것으로 서독의 자연과학을 쉽게 통합·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sup>46</sup>

통일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동독의 교육제도 및 학문연구의 제조직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큰 글자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연방체제로 개편된다는 것을 내용으

44 R. B. Fischer, ebd.

45 동독 학문의 재정적 실태에 대해서는 H. Meier, Gnadelose Dampfwalze, Die Zeit 24, vom 1. Jan : 1991, 86

46 R. B. Fischer, ebd 346.

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약 3조가 지시한대로 새로이 구성되는 주정부(동독지역의)가 구 동독지역의 교육, 학문연구, 기타 제도를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37조에는 교육제도의 개편에 관해서 1964년의 함부르크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서독 교육법에 준해서 개편되도록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골자로 하여 각주에서 진행된 개편작업은 각각 그 주의 형편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진행되었다.

조약 38조에는 대학외의 연구기관의 학문과 연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연구기관이나 연구원의 계속성 여부는 새로이 구성되는 평가단에 의해서 평가되도록 결정하였고, 그 시한은 1991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학문연구조직에 대한 전망의 문제가 제시된다. 새로이 조직되는 연구기관에 필요한 인원, 재평가에서 탈락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구 서독의 연구단이 동독을 점유하는 형태가 아니다. 독일통일이 모든 학문연구자에게 자기 비판적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는 취지에 입각해서 평가되어야함을 밝히고 있다.<sup>47</sup>

대학제도의 개편에 따라서 대학교수의 평가도 진행되었다. 이미 서독의 대학에서 교수평가는 일반적 추세로 실시되고 있다. 그 결과, 정신과학, 사회과학, 법학, 경제학등 인원부족이 심각한 분야에서 구 서독학자들이 구 동독학자들과 혼합해서 대학운영, 연구, 교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독의 교수 및 조교들이 연구휴가를 내어 동독대학의 세미나 운영에 참여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물론 아니다. 동독 각 대학에서 실직교수들이 항거가 일어나고 대학생들의 단식, 학교점거, 농성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항거나 시위는 산발적인 것이었고 대규모의 추종세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판에 의한 학문·교육에의 개입에 항의를 표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sup>48</sup> 당국과 대학간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구 동독내에서도 실현될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전망되는 균형에도 불구하고 교육제도와 학문연구의 개편을 위한 막대한 재정문제는 계속되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 V. 결 론

사회주의 통일당을 토대로 독일민주주의 공화국은 하루 아침에 성냥개비로 만든 집처럼 허물어졌다. 이를 통합한 서독은 모든 부분에서 선두주자와 같은 우위를 점하고 승리자가 된듯한 환상 속에서 통일은 이루어졌다. 참으로 통일과정은 전격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통일과정은 물론 동독국민의 의사결정에 의해 민주

47 R. B. Fischer, ebd.

48 R. B. Fischer, ebd.

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성급한 통일에 대한 비판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카알 슈미트의 이론을 자주 인용한다. 「실제, 다수결은 잘못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을 수 있기에 전전한 국민감정이라는 다수파로서 발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정통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민주적 결정이란 언제나 잠정적 정통성이어서 원칙으로서 무제한의 심사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위에서 살핀듯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에 걸쳐서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이질화의 극복은 단시일 안에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동독 정치질서를 흡수 통합한 연방공화국의 앞날에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산적된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 연방공화국의 변혁에 의해서가 아니라 확장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었을 때 헌법의 문제가 제기된다. 원래 기본법은 통일될 때 효력이 정지될 운명을 가진 임시법이었다. 새로운 헌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여당이 제시하는 국가배상안, PKO 해외파견안, 항공관제안, 또한 야당이 제시한 환경보호, 노동의 권리, 원자력·생화학 무기의 금지 등 산적한 문제 등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하나로 통일된 독일은 그 규모와 중요성에 비추어 「중유럽」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이 틀림없고 유럽의 장래와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 통일이 실현되었을 때 새 독일대통령 바이체카 대통령은 「독일통일은 서독일의 단순한 확대와는 다르다. 역사상 전 독일이 서유럽 민주주의 속에 안주할 수 있는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콜은 「독일통일과 유럽의 통일이 불가분」이라는 사실을 들어 독일통일이 유럽통일을 실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독일은 과거와 같은 독일국민만을 위한 국민 국가가 아니라 동·서유럽을 결합하는 매개적 입장을 가진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미테랑의 「유럽 연방」, 고르바초프의 「유럽공동의 집」이라는 발상 속에 독일의 위치를 설계하고자 한다.

그러나 서로 40년간에 걸쳐 이질적인 정치, 사회, 사상의 체제밑에서 이질화되었던 두 부분의 독일이 이질화를 극복한 완전한 통일을 보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Bracher, K. D.

1991 'Vierzig Jahre Diktatur(SED-Unrecht)', *Recht und Politik*, 27, pp.137-141.

Brunner, G.

1979 *Einführung in das Recht der DDR*, München.

Eucken, W.

*Deutschland vor und nach der Währungsunion*.

- Fischer, R. B./Schmidt, N.  
'Das zweifache Scheitern der DDR-Schule,'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37-38/9, p. 29.
- Jesse, E. u.a.  
1992 *Die Gestaltung der deutschen Einheit*, Bonn.
- 1972 *Materialien zum Bericht zur Lage der Nation 1972 von 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Bonn.
- Narr, W. D./Thränhardt, D.(Hg.)  
1979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Entstehung, Entwicklung und Struktur*, Königstein.
- Thaysen, U.  
1990 *Der Rund Tisch, Oder : Wo blieb das Volk?*, Opladen.
- Toeplitz, H.  
1984 *Der Bürger und das Gericht*, O.Berlin.

### The German Unification and its Challenge: judicial, economic, and cultural aspects

Lee Min Ho

The rapid process of the German Unification in 1990 was achieved by the democratic decision of the East German population. However, such a decision by majority provides only a provisional legitimacy. A comprehensive legitimacy can only be achieved through a settlement, by a democratic process, of various social problems raised by the unification itself. The crucial issues in post-unification Germany can be broadly grouped into three categories—judicial, economic, and cultural.

The German Unification has brought about a need for a radical transformation of the judicial system in former East Germany as a part of the project to build a new constitutional state. This process cannot but include a thorough review and replacement of the former judicial officers who will need reeducation.

Second, the economic situation in former East Germany is determined by two paradoxical factors: an exodus of labor force and human capital into former West Germany and a maintenance, within the former East Germany areas, of a low wage structure for survival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so-called 'Creative Destruction' proposed by the people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response the current situation, could be effective, it would seem, only in a limited number of regions and only as a

part of an extended process.

Finally, in the former East Germany, culture, arts, science, and education were dominated by the communist party (SED) in a strict centralized system. What is needed, especially in formulating a new cultural policy, is a healthy atmosphere of debate and criticism on the basis of principles of pluralism and autonomy. However,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s and academic institutions in formerly East Germany requires an input of massive financial support.

The historically created heterogeneity—in various aspects of the society—between the former West and East Germany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or in short time, resolved. The resolution of just these problems and issues, however, are crucial factors in the comple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이민호,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명예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봉천1동 715-146

Tel : 871-4677(H)